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의안번호 : 제3165호

나. 제안자 : 김원태 의원 외 14명

다. 제안일 : 2025년 10월 19일

라.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세운광장은 도심 속에서 시민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민활동 거점임
- 행사 규모 확대와 운영 다양화로 주최 측의 행사 기획·협의·안전 관리 등 사전 준비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이에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확대해 주최 측의 준비와 안전관리 여건을 강화하고, 광장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운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기간을 개정함(안 제5조)

4.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운광장 사용허가 신청 기간을 현행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서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이는 서울광장 운영 기준¹⁾과 동일한 신청 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서울시 주요 광장·공공공간 간 사용허가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행사 주최자가 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광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u>60일 전부터 7일 전</u> 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 ----- ----- <u>90일 전부터 5일</u> ----- --.

나. 검토 내용

- 세운광장은 2014년 3월 세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당초 '광장'(경관광장)이었던 시설이 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 '공원'(문화공원)으로 결정²⁾된 공간임

1) 서울광장의 경우 광장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시설·무대 설치, 안전관리 준비 등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 11월 1일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신고 기간을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조정한 바 있음

2)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 2014.3.27.)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광장	경관광장	종로구 장사동 116-3번지 일원	9,539	감)9,539	
신설	공원	문화공원	종로3가 143-1번지 일원	-	증)3,748.3	3,748.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3)에서 공원시설에 '도로 또는 광장'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 내 광장 성격 공간에 대하여 조례를 통해 사용허가·관리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 체계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⁴⁾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설치·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세운광장 사용허가 절차·여건·기간을 조례를 통해 변경하는 것은 자치입법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세운광장은 면적 약 3,748m²의 비교적 소규모 공간으로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처럼 대규모 집회·행사가 빈번히 열리는 대표적 도심 광장이라기 보다는 중소규모 행사·프로그램이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최근 6년간 세운광장 사용허가 현황에 따르면 세운광장 지하에 위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이하 중략)

4) 「지방자치법」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로 하여금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자. 공유재산(公有財產) 관리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치한 ‘세운홀’의 대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한 상황이며 세운광장의 연간 사용허가는 8건 이하로 현재까지 대규모 장기 행사나 복수 기관이 참여하는 행사는 많지 않은 실정임

< 사용허가 현황 >

(단위: 건, 천원)

구 분	허가 건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계	6	20	24	26	18	41	135
세운광장	2	3	8	5	1	6	25
세운홀	4	17	16	21	17	35	110

<출처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세운광장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세운지구 일대는 향후 녹지생태도심 사업 및 세운재정비촉진계획 후속사업을 통해 도심공원·보행축·공공문화 공간이 단계적으로 확충될 예정으로 향후 시민·문화행사 수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용허가 신청 기간을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로 조정하는 것은 서울광장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민·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세운지구 개발 및 녹지생태도심 조성에 따라 행사 수요와 유형이 다양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신청 마감기한을 ‘7일 전’에서 ‘5일 전’으로 조정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중소규모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교적 단기간 준비가 가능한 행사에 대한 신청 기회를 일정 부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할 것임

- 다만, 신청기간 상한이 90일로 확대될 경우 향후 행사 수요 증가 시 특정 단체의 장기 선점 등으로 사용 기회가 편중될 우려도 있는 바, 허가 심사 과정에서 공익성, 행사 성격, 규모, 기존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 시 세부 운영지침을 통해 공정한 사용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운광장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함으로써 서울광장과 운영 기준을 일치시키고, 향후 세운지구 개발 및 녹지생태도심 조성에 따른 행사 수요 확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청기간 상한 확대로 향후 행사 수요 증가 시 특정 주체의 장기 선점 등 사용기회 편중 우려가 있는바, 허가 심사 기준과 세부 운영지침을 통해 공익성·행사 성격·규모·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사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사용신청)의 내용을 수정하여, 세운광장 사용 신청 시 시장에게 사용허가서 제출기간을 변경(60일 전부터 7일 → 90일 전부터 5일)하고자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